

<편집위원장 서문> 「환경법과 정책」 제13권을 발간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 교수입니다.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회에서는 제13권의 특집주제를 ‘환경공익소송의 활성화와 환경변호사의 도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그 특성상 공익소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명감 넘치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13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국내외 환경법 전문가들의 귀한 논문 4편을 게재하였습니다. (1) 미국 Lewis & Clark Law School의 Chris Wold 교수님께서서는 “코끼리 상아 및 코뿔소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변호사와 법학도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소중한 원고를 주셨습니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의 잔혹한 밀렵과 불법거래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는 무슨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2) 배영근 변호사와 송정은 박사과정생은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 양성방안”이라는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배영근 변호사께서는 오랫동안 일선에서 환경공익소송을 맡아오면서 몸소 터득한 소중한 경험과 환경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들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3) 박태현 교수님께서서는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와 환경변호사의 과제를 서술하면서, 환경변호사는 법원에 의한 실제통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변론하여야 하고, 현재 법원의 소극적 환경보호입장을 비판하면서 대안적 사법심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정남순 변호사와 고수윤 연구원은 환경피해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신적 피해의 인정기준을 다시 검토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논문으로는 모두 4편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1) Erica Lyman 교수님은 기후기금 내에서 녹색기후기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존하는 다른 기후기금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을 하고 있고, (2) Patrick L. Aitchison 변호사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상의 엄격한 심사 기준의 적용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 엽광희 연구원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 갈등 비교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관한 시민 수용성의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4) 박시

원 교수님은 녹색기후기금의 현재 당면한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면서 향후 그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네 편의 일반논문들도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해당분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법과 정책」 제13권이 발간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편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장님, 강원대 로스쿨에서 저와 함께 환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현, 박시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환경법센터 교수윤 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 **함태성**